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856

발의연월일: 2024. 9. 10.

발 의 자:서영석・이해식・이기헌

박홍배 • 소병훈 • 문진석

윤종군 • 김재원 • 최기상

김용민 • 전진숙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에서 안정적인 양육이 불가하여 타 가정에 위탁보호 중이거나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여 거주 중인 아동에 대하여 위탁보 호 종료나 시설 퇴소 후의 자립을 위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 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과 유사한 수준의 자립지원이 필요하나, 이들을 소관하는 주무 부처가 각각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로 상이하고 현행법 또한 보건복지부의 소관임에 따라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거주 중인 아동은 현행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도 현행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부처 간 정책 칸막이로 인한 복지서비스 제공의 한

계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제38조의2제1항·제3항 및 제39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복지시설"을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1호부터 제3호"를 "제1호부터 제4호"로 한다.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제3호 에 따라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제38조의2제1항 중 "아동복지시설"을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내용과 방법"을 "내용과 방법 및 대상 시설의 범위"로 한다.

제39조의2제1항 중 "아동복지시설"을 "아동복지시설 및 특별지원 보호 시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제3호 에 따른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말한다)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	제38조(자립지원) ①
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	
탁보호 종료 또는 <u>아동복지시</u>	<u>아동복지시</u>
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	<u>설 등</u>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	2
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
	항제3호에 따라 특별지원 보
	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	5. 제1호부터 제4호
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	
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	
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	
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자립지원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이
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u>아동</u>
<u>복지시설</u> 퇴소 이후의 자립지
원, 생활 및 정서적·신체적 건
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
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생략)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u>내용과 방법</u>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 보호 종료 또는 <u>아동복지시설</u>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 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8조의2(자립지원 실태조사) ①
<u>아동</u>
<u>복지시설 등</u>
② (현행과 같음) ③
<u> 내용과 방법 및 대상 시설의</u> 범위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①
<u>아동복지시설</u> 및 특별지원 보호시설(「성폭
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제12조제3항제3호에
<u> 따른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말</u> <u>한다) 등</u>
 ② (혂행과 같음)